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제3056호

제출년월일 2022. 10. 4.
제 출 자 김 포 시 장

1. 심사경과

❍ 본 안건은 2022년 10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여 나가고자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라.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제214회 정례회’ 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부결된 동명의 안건과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이후 ‘제216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7조(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와의 내용적 관계성 또한 확인되어 당시 부결 사유들과 관련 지적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동명의 안건(제214회 정례회 제출)과 달라진 점으로, ▲안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안 제9조(관리 및 운영)에 '수탁관리자 종류 관련 사항(제1항)', '자체규정에 관한 사항(제2항)' 및 '법령 인용 사항(제3항)'이 추가되었으며 ▲안 제10조 '재정지원' 조항에 '센터 운영비 충당'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음. 또한 ▲수탁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담고 있는 안 제11조(지도감독)가 신설되었음.

<참고 - 관련 안건>

가.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회 기:** 제214회 정례회
-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 **안건내용:** 붙 임2
- **부결사유:**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에는 공감하나,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는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의 한 부분으로 두 조례는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나.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회 기:** 제216회 임시회
-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 **안건내용:** 붙 임3
- **부결사유:**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범위 및 규모 등에 있어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 조례제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미디어센터 설치장소 선정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

[붙임2] 관련 안건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김포시민의 영상문화 향유와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 및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기능)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디어교육
2. 무료영화 상영, 독립예술 영화 상영 등 영화관 운영
3. 시민 미디어 활동을 위한 창작지원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
4. 방송·영상·미디어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5. 시민, 1인 창업, 미디어 관련 기업을 위한 장비, 시설의 대여·대관
6.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체험
7. 그 밖에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교육공간: 강의실 등
2. 제작공간: 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 등
3. 상영공간: 상영관, 영상자료실, 열람실 등

4. 그 밖의 공간: 회의실, 기자재실 등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신청을 할 경우 신청내용 검토 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겹칠 경우 선착순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와 같으며, 장비 사용료는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 감면은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면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면제
3.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면제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면제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 감면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 감면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감면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50% 감면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감면
10. 「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2에 따른 다자녀 가정: 50% 감면

④ 제3항제5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비가 발생하는 장비 사용료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부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나. 김포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다. 시설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사유가

인정된 경우

라. 매 강좌별 교육의 첫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 포기원을 제출하는 경우

2. 일부반환: 수강생이 매 강좌별 교육 개강 후 수강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제출일까지의 수업 횟수를 제외한 남은 수업 횟수에 대한 수강료

제8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관련 안건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영화·영상 등의 미디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 산업”이란 영상 및 음성 매체를 활용한 산업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매체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3.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 및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4.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 정보를 분석·평가·가공할 수 있는 영상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영화·영상 등의 미디어 문화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김포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미디어 산업 및 마

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재정확보 및 민관협력 방안 수립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미디어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영화제 등 영상물 출품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시민미디어센터에 대한 지원
6. 유관 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7. 그 밖에 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미디어 활성화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사업
3. 미디어 관련 조사, 연구 및 홍보 사업
4.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영상 기획 및 제작, 영상 유통 및 상영 지원에 관한 사업
5. 영화·영상 관련 우수 미디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장애·고령·외국인 등 미디어 접근이 어려운 계층 및 지역의 상영 지원에 관한 사업
7. 김포시 로케이션 촬영 유치 및 지원 사업
8.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6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시장은 김포시의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김포시의 미디어 산업 및 시민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영상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미디어교육

2. 무료영화 상영, 독립예술 영화 상영 등 영화관 운영

3. 시민 미디어 활동을 위한 창작지원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

4. 방송·영상·미디어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5. 시민, 1인 창업, 미디어 관련 기업을 위한 장비, 시설의 대여·대관

6.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체험

7. 그 밖에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김포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 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김포시의 미디어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디어 업무 관련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 미디어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